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545
----------	-------

발의연월일 : 2025. 5. 19.

발의자 : 민형배 · 이개호 · 주철현
김동아 · 박지원 · 김용민
김현정 · 양문석 · 이성윤
소병훈 · 강유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공공용으로 제공하면 전액 면제해 빈집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빈집 문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빈집은 153만 5,000호로 전체 주택의 7.9%에 달합니다. 이렇게 방치된 빈집은 화재 · 범죄 등의 위험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어 철거 등 적절한 관리가 시급합니다.

问题是, 현행 제도상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토지분)가 증가해 철거를 기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발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철거명령을 이행한 경우, 해당 빙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부속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빙집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안 제84조의2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7절에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철거된 빙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빙집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빙집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빙집을 철거하거나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에 따라 빙집을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빙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거된 빙집의 부속토지(「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를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주차장·쉼터·공원·텃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거된 빙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4 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84조의2(철거된 빙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p> <p>「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빙집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빙집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빙집을 철거하거나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철거 명령에 따라 빙집을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빙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철거된 빙집의 부속토지(「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를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주차장·쉼터·공원·텃밭 등 대통령</p>

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
용으로 사용(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도록 제공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
는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